

경운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립학교법 제6조 및 학교법인 승선학원 정관 제6장 제2절에 의하여 경운대학교 교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원의 인사질서를 확립하고 적정한 신분의 보장을 목적으로 학교법인 승선학원에 교원징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조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항에 의하여 위촉한다.

- ①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은 경운대학교 교원 또는 학교법인 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단, 학교법인 이사인 위원의 수가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경운대학교 직원 중에서 임명권자가 위촉한다.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한 후임의 임기는 결원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4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제척 또는 기피신청) ① 위원회의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가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인정되어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위원장은 위원수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될 수 있도록 이 사장에게 임시위원의 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징계의결 요구 및 통지) ① 교원의 임면권자(제청권자)는 그 소속 교원 중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법령, 정관 및 제 규정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심히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 및 근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징계요구권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징계 의결 요구서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시효) 징계의 의결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8조(진상조사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7할을 감한다.

③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보수의 4할을 감한다.

④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10조(징계의결) ① 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록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징계의결 통지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면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② 임면권자는 전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징계처분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사유를 기록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징계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1조(보고) 임면권자가 교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그 징계에 관하여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기타규정을 준용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위원회에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위원회의 사무) 위원회의 사무는 교무처에서 관장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교원징계의결요구서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성 별	
	주 소					
징계종류						
징계사유						
요구자의 의 견						
첨부서류	1. 징계혐의자 이력서 2. 징계혐의자 근무성적표 3. 징계혐의사실 입증서류 4. 기타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함.						
년 월 일						
요구자 직위 : 성 명 : (인)						
경운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 귀하						

